

의안번호	제3061호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의 결 사 항	
------------------	--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6. 3. 6.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1
----------	------

발의연월일: 2026. 3. 6.

발 의 자: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이정숙 의원(8인)

##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현행: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변경: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나. ‘장애인범죄’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 5호 및 제6호)

다. 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마. 그 밖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함(안 제11조 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3호

- 예고기간: 2026. 3. 6.(금) ~ 3. 12.(목)[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 4. 본 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를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

피해 예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 중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각각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권보장”을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으로 한다.

### 3.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사업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중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을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으로, “위한 장애유형”을 “위하여 장애유형”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  
피해 예방”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  
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  
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인권보장에”를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  
죄피해 예방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을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차별금지 및 인권”을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으로 하  
고, 같은 항 제4호 중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으로 한다.

제10조 중 “인권보장”을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u>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 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 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 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3조(군수의 책무) (생 략) <u>&lt;신 설&gt;</u></p>	<p><u>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차별금지 · 인권보장 및 범 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u> ----- ----- -----.</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 5. <u>“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 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 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u> 6. <u>“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 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u></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 · 지원 등에 관한</u></p>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① (생략)

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고성군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생략)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계획
4. 5. (생략)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

-----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  
-----.

② -----.

1. ----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2. (현행과 같음)
3. ----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4.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 (생략)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6. -----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제6조(지원사업) -----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

1.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사업
4. -----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제6조의2(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 및 정도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  
위하여 장애유형 --  
-----  
---

제7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 인권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  
-----  
-----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



<p>사항</p> <p>5. (생략)</p> <p>제10조(포상) 군수는 <u>인권보장에</u>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u>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p> <p>5. (현행과 같음)</p> <p>제10조(포상) ----- <u>장애인 차별 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u>----- ----- -----.</p> <p>&lt;삭제&gt;</p>
---	--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현 상황에 맞게 조례개정하는 사항으로 발의 의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복지지원과장 천 미 옥

## 관 계 법 령(발췌)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③ (생략)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

- 때,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제)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